

	취업창업 지원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4. 3. 1.
		최종개정일자	2018. 3. 1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.) 기획산학처의 취업·창업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기획산학처의 취업·창업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.<개정 2016.3.1>

1. 기획산학처에는 처장과 부처장을 두며, 처장과 부처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6.3.1>
2. 기획산학처장은 기획산학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부처장은 업무를 관장하며 처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6.3.1>
3. 기획산학처는 취업·창업지원을 위해 취업창업전담지도교수제와 취업대책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한다.<개정 2016.3.1>
4. 기획산학처는 취업을 관장하는 팀과 창업을 관장하는 팀을 구분하여 운영 한다.<신설 2016.3.1>
5. 기획산학처에는 취업과 창업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둔다.<개정 2016.3.1>
6. 기획산학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다.<신설 2016.3.1>

제3조(업무) 기획산학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6.3.1>

1. 학생 취업과 창업 활성화에 관한 기획 업무<개정 2016.3.1>
2.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지원 특강 프로그램 운영 업무<개정 2016.3.1>
3. 취업과 창업 관련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업무<개정 2016.3.1>
4. 취업과 창업에 대한 동향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<개정 2016.3.1>
5.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정보의 홈페이지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업무<개정 2016.3.1>
6. 취업과 창업 연계를 위한 기업체 개발 및 방문지원 업무<개정 2016.3.1>
7. 취업과 창업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<개정 2016.3.1>
8.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진로상담 및 운영에 관한 업무<개정 2016.3.1>
9. 학생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
10. 학생 취업과 창업에 대한 동아리 운영 및 지원.<신설 2016.3.1>
11.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한 학생 창업관련 지도 및 지원.<신설 2016.3.1>
12. 취업자 및 창업자 관리를 위한 추수지도 업무<신설 2018.3.1>
13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업무 및 산학취업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운영
14.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개선 환류 시스템에 적용하는 업무

제4조(취업창업전담지도교수제)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 및 진로상담을 위하여 취업창업전담지도교수제(이하 "지도교수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6.3.1>

제5조(취업창업전담지도교수의 기능) 지도교수는 소속 학과 학생들의 입학에서 졸업(취업)까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진로상담을 담당한다.<개정 2016.3.1>

제6조(취업대책실무협의회) 학생들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 인사를 취업대책실무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.)를 운영한다.<개정 2016.3.1>

제7조(협의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취업 · 창업활성화 대책 수립 및 취업 · 창업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
2. 취업 · 창업활성화에 관한 기획과 취업 및 창업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3. 취업 · 창업활성화를 위한 산·학 연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
4. 취업 · 창업역량강화를 위한 특별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취업창업활성화 및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협의회 구성 및 임기)

1. 협의회는 회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회장은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.
3.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위원은 지역(광주,전남) · 의료보건계열 및 산업체 관공서 등의 실무인사 중에서 선임 한다.
4. 회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5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협의회 책임과 권한)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.

제10조(회의) 1. 협의회는 위원 1/3이상의 회의 소집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/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2. 이 규정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한다.

제11조(경비)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